

학교법인 성광학원

(2023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4:00 ~ 15:3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2월 3일)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삼평동 689) 차바이오컴플렉스 5층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향
 - 참석 임원
 - 이사 12인 : 김한중, 차광렬, 김병수, 김승조, 김춘복, 정길생
차원태, 김광중, 강일모, 장성구, 김동익, 지훈상
 - 감사 2인 : 원형태, 박동혁
 - 결석 임원 : 없음
4. 안 건
 - 제1호 :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 제2호 :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변경
 - 제3호 : 교원 인사
 - 제4호 : 학칙 개정
 - 제5호 : 부속병원 대손상각 및 자산 매각·폐기
 - 제6호 :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7호 : 2023회계연도 예산(안)
 - 제8호 : 대표서명 임원 선출
5. 회의 내용
 - (1) 성원보고
 - 김철 사무국장 :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였음을 설명 한 후 성원 보고를 하다.
 - 이사장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2) 개회기도
 - 김병수 이사 : 개회기도를 하다.

서명

(3) 전차이사회 회의록 확인

- 이사장 :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이미 개별적으로 우송해드렸으므로 낭독은 생략할 것을 설명하고 전차이사회 회의록의 확정 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 :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찬성하다.
- 이사장 : 전차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확정함을 선언하다.

(4) 업무보고

- 김철 사무국장 : 전차이사회 안건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다.
- 김동익 총장 : 대학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다.

(5) 안건심의

안건 제1호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건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박동혁 감사 : 사이버대학 설립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서 작성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 김승조 이사 : 우리 법인의 숙원 사업이며 작년 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김광중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 : 내용 별첨

안건 제2호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건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김춘복 이사 : 제1호 안건과 연관된 것으로서 사이버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김동익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 : 내용 별첨

안전 제3호 교원 인사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하다.
- 김재환 교무처장 : 교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다.
- 김병수 이사 : 본 안전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차원태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교원 인사 : 내용 별첨

안전 제4호 학칙 개정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하다.
- 강형곤 기획처장 : 대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김병수 이사 : 학부제 시행에 따른 전공 선택 및 변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검토해야 하며, 시행 과정의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에 따른 제도적 장치 및 교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장성구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동의하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학칙 개정 : 내용 별첨

안전 제5호 부속병원 대손상각 및 자산 매각·폐기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안전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
- 지훈상 이사 : 대손상각은 연락두절, 시효경과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며 불용자산 매각·폐기는 차량교체 및 장비 노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차광렬 이사 : 재청하다.

부속병원 대손상각 및 자산 매각·폐기 : 내용 별첨

안건 제6호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 설명하다.
- 정길생 이사 : 본예산 편성 후의 사정변경과 가결산을 기초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
- 차원태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회계	2022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법인일반업무	9,918,918
법인수익사업	4,719,006
교비	125,093,656
부속병원	102,353,094

안건 제7호 2023회계연도 예산(안)

- 이사장 :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
- 김철 사무국장 :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요약 설명하다.
- 김광중 이사 :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고,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동의하다.
- 김승조 이사 : 재청하다.
- 이사장 :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회계	2023 예산(안) (천원)
법인일반업무	19,255,588
법인수익사업	4,487,503
교비	131,803,365
부속병원	105,955,417

- 김병수 이사 : 차병원그룹에서 2025년 완공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첨단 바이오 시설(CGB)은 향후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모든 임원들이 힘을 합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다.
- 모든 임원들이 동감을 표하다.

안건 제8호 대표서명 임원 선출

- 이사장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김춘복, 장성구 이사와 원형태 감사를

서명

제안하자 참석한 모든 이사가 찬성하다.

(6) 폐회선언

- 이사장 :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이사장	김 한 중	[Redacted]
	차 광 렬	
	김 병 수	
	김 승 조	
	김 춘 복	
	정 길 생	
이사	차 원 태	
	김 광 중	
	강 일 모	
	장 성 구	
	김 동 익	
	지 훈 상	
감사	원 형 태	
	박 동 혁	

서명 [Redacted]

안건 제1호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1. 지난 경과

- 2021.03.30. 2022.03.24. 설립계획서 2회 제출
- 2021.07.13. 2022.07.05. 교육부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
 - 기본 요건(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재정운영, 서버 등) : 정량 기준 충족하나 적극성면에서 다소 미흡
 - 학사운영관리계획 : BT분야는 적절한 반면 IT분야는 부족
 - 그 외 설립목적·주체 및 수요분석 등 미흡

2. 재추진 방향

- 설치학과, 정원 등을 대폭 변경·보완
- 기존 차의과학대학과 차병원그룹의 지원·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BT중심 학과로 구성
- 수요분석 등 보완

3. 개요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안)
대학명칭(가칭)	차사이버대학교	차바이오사이버대학교
학부·학과 수	2개 학부 13개 학과	2개 학부 8개 학과
입학정원	1,990명	950명

- 설치 학과(안)

1계열	바이오헬스케어계열	
2학부	바이오융합학부(4개)	헬스케어융합학부(4개)
8개 학과	• 바이오식의약학과 •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 • 바이오빅데이터학과 • 바이오제약산업학과	• 바이오헬스경영학과 • 스포츠재활학과 • 임상상담심리학과 • 평생건강복지학과

서
명

4. 일정

- 2023.03.31.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제출, 승인 신청
- 2023.06.30. 교육부, 설립계획 승인
- 2023.08.31.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
- 2023.10.31. 사이버대학설립인가 통보
- 2024.03.01. 개교

5. 추인 : 세부적인 사항과 소요 예산 및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경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 및 추인

안건 제2호 야탑동 수익용기본재산 일부 조건부 용도 변경

1. 용도변경 할 재산의 표시 및 예상 금액

- 용도변경 내용 : 수익용기본재산 → 교육용기본재산
- 용도변경 할 재산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지목	용도변경 부분	면적(㎡)	감정평가액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주차장공유면적포함)	1,896	약 45억원 추정
토지			대지	위 해당 지분	498	
계						

- 총 7층(지하2~지상5) 건물의 지상 1층만 용도변경하는 것임
- 감정평가액은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이사회 개최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확하게 산출

2. 용도변경 사유

- 사이버대학설립에 필요한 교사 확보

확보 기준		확보 계획(야탑동 222 건물 1층)	
입학정원	전용 면적 ^{*1}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전용 면적
950명	990㎡ (300평)	1,600.24㎡ (484평)	1,322㎡ (400평)

^{*1}전용 면적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1항 별표 1

* 계단, E/L, 복도, 로비 등 공용 제외한 실 사용 면적

- 2023년 5~6월 중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조건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6월에 사이버대학설립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즉시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명

3.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보전 계획

- 대체재산 확보 소요액 : 약 45억원
- 확보 방안
 -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주식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약 30억원)
 - 부족한 금액은 기부 수입 등으로 충당(약 15억원)
- 시기 :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2023. 6. 30.까지) 후 주식의 수익용기본재산 편입 의결 및 기부금 수증
- 기타 : 대체재산 산정 방식, 주식 평가기준일 등은 교육부의 허가 내용에 따름

4. 재산보유 현황(2022. 4. 1.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

(단위:백만원)

구분	교육용기본재산(편제정원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교 지(m ²)			교 사(m ²)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기준	보유	확보(%)			
현재	79,312	97,507	122.9	39,656	42,101	106.2	80,587	82,378	102.2

* 위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은 일부 수익용기본재산만 감정평가한 금액임

5. 일정(안)

- 2023. 3. 31. 성광학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제출
- 2023. 5~6. 성광학원, 조건부 용도변경 허가 신청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조건부 용도변경」 허가
- 2023. 6. 30.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 2022. 7. 성광학원, 사이버대학 교사 활용 및 교육부 허가사항 이행

안건 제3호 교원 인사

□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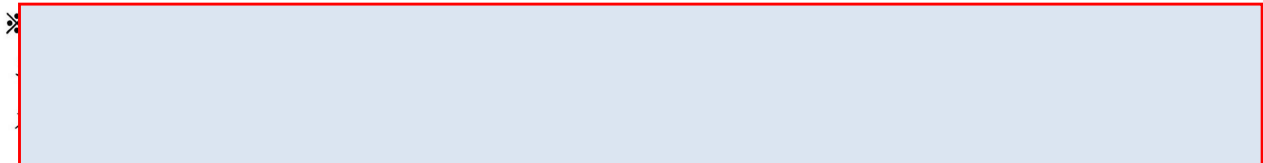
○ 2023. 3. 1.자 재임용 131명 : 전임교원 106명(추인), 초빙교원 25명

구분		인원(명)	비고
전임 교원 (추인)	재임용	비임상	교수 2, 부교수 7, 조교수 9
		임상	교수 4, 부교수 24, 조교수 60
	소계		106
초빙 교원	재임용	25	초빙교수 2, 초빙부교수 5, 초빙조교수 18
	소계	25	
계		131	

1. 전임교원, 재임용 106명(추인)

가. 비임상 18명(교수 2, 부교수 7, 조교수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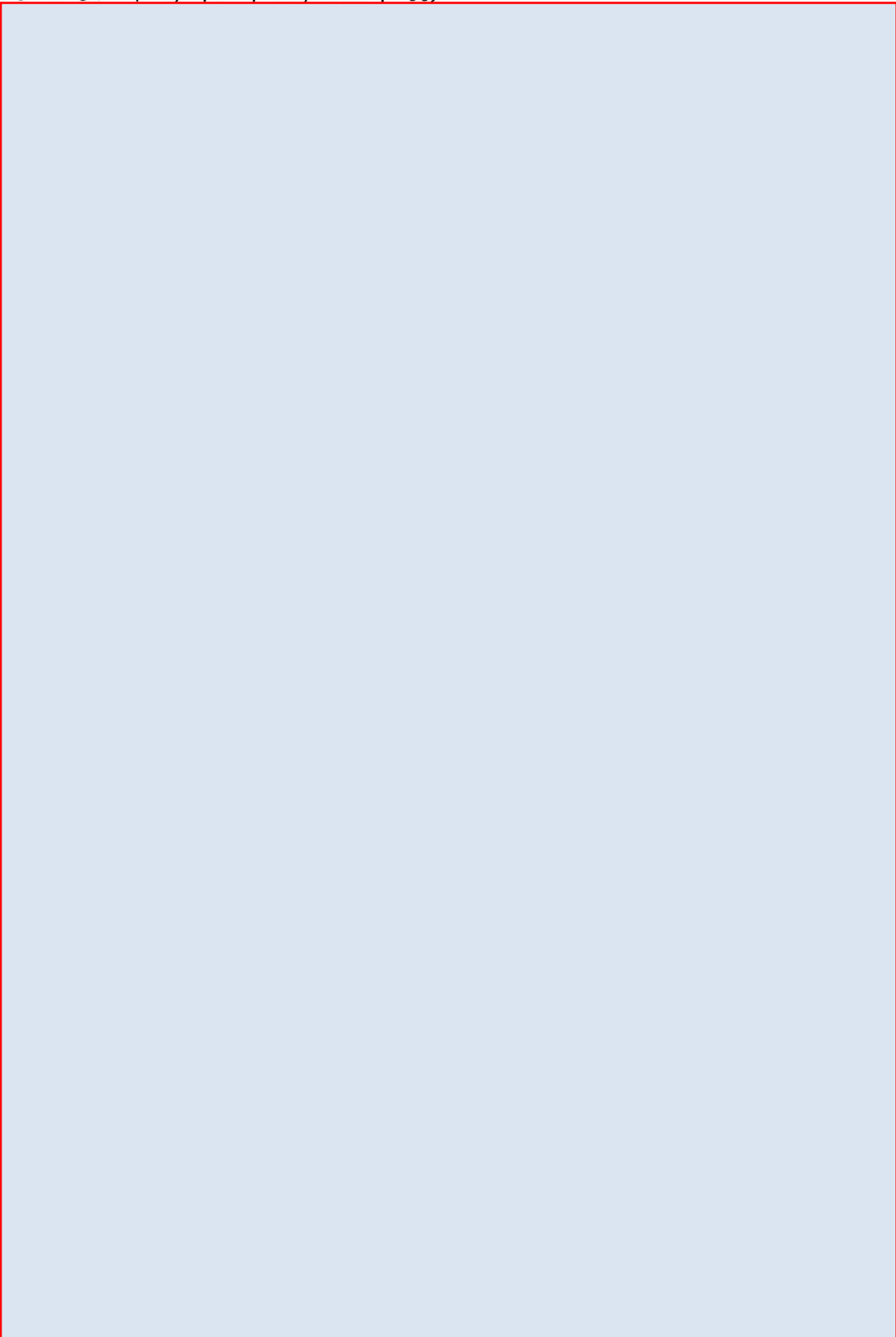
NO	성명
1	윤
2	정
3	이
4	최
5	홍
6	니
7	양
8	심
9	이
10	김
11	이
12	박
13	Wood Ma
14	강
15	강
16	정
17	박
18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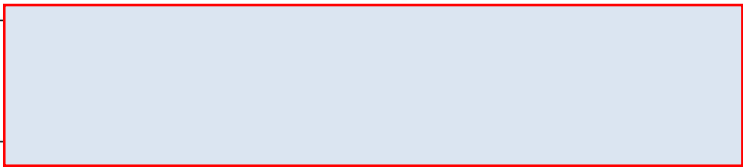
서명

나. 임상 88명(교수 4, 부교수 24, 조교수 60)

NO	
1	사
2	학
3	은
4	하
5	사
6	수
7	사
8	사
9	사
10	사
11	남
12	사
13	수
14	이
15	장
16	사
17	박
18	스
19	이
20	스
21	장
22	박
23	장
24	장
25	장
26	사
27	이
28	이
29	이
30	장
31	준
32	스
33	남
34	장
35	장
36	박
37	박
38	양
39	강
40	이
41	남
42	차
43	박
44	김
45	김



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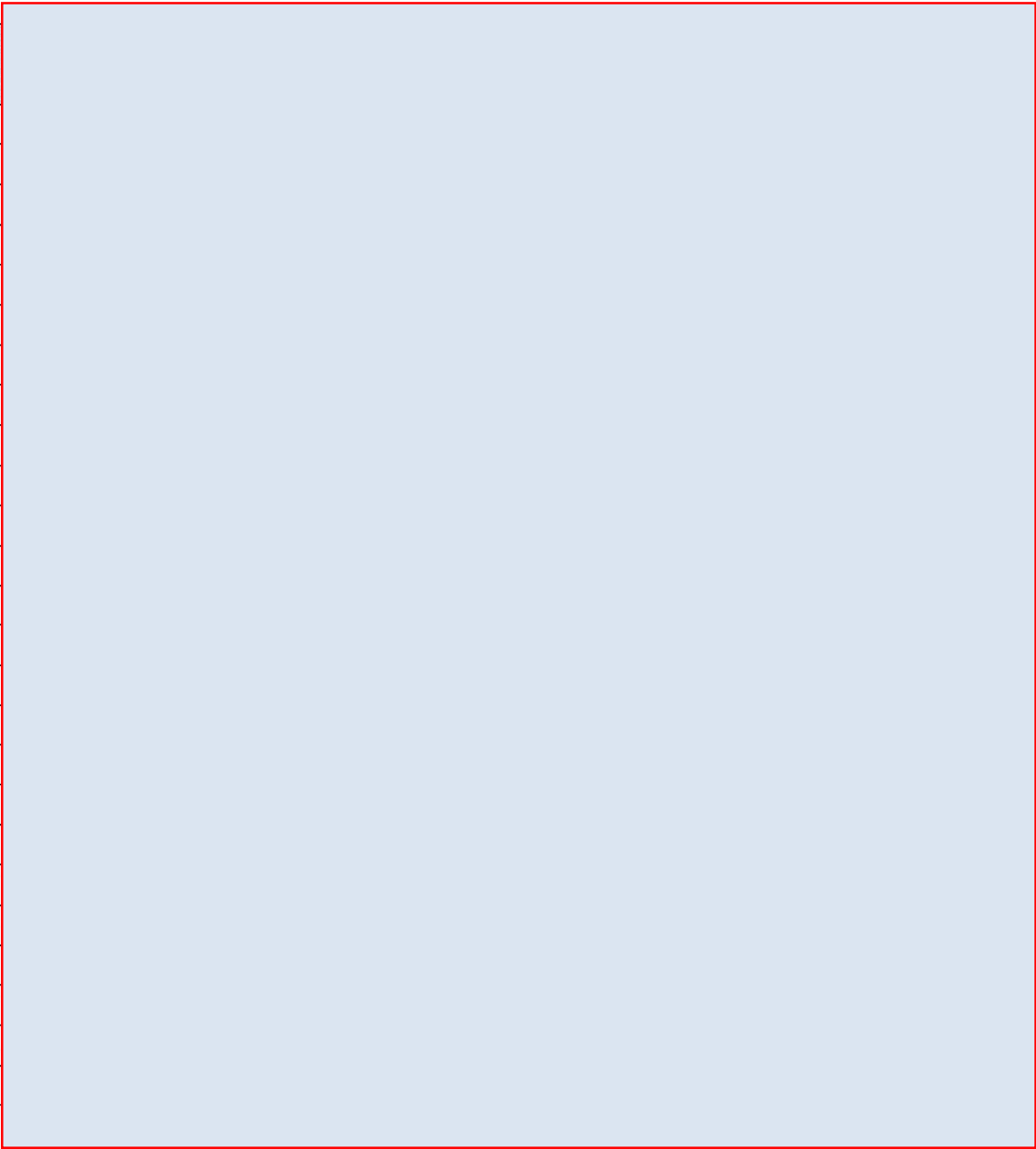


46	김중	원
47	서호	원
48	이경	원
49	방민	원
50	박성	원
51	김권	원
52	정희	원
53	김성	원
54	최다	원)
55	노중	원
56	한유	원
57	방윤	원
58	이거	원
59	송경	원
60	조영	원
61	박성	원
62	공유	원
63	황지	원
64	김지	원
65	허윤	원
66	원서	원
67	송주	원
68	김유	원
69	우민	원)
70	남준	원)
71	송영	원
72	이서	원
73	강바	원
74	천지	원
75	박정	원
76	안성	원
77	김성	원
78	강인	원
79	박윤	원
80	강서	원
81	정희	원
82	김태	원
83	부희	원
84	홍소	원
85	이현	원
86	이현	원
87	심정	원
88	박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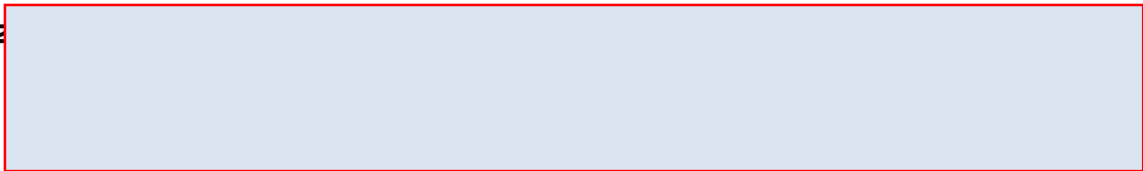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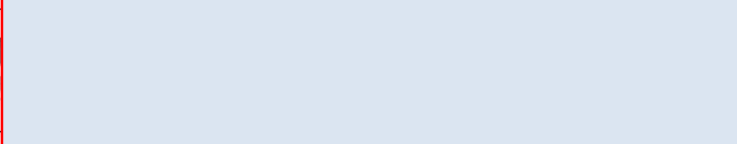
2. 초빙교원, 재임용 25명(초빙교수 2, 초빙부교수 5, 초빙조교수 18)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



서 명	
--------	--------------------------------------------------------------------------------------

안건 제4호 학칙 개정

1. 대학 학칙

가. 개정 이유 : 미래형 융복합 교육체계 시행에 따른 학칙 정비

나. 주요 내용

- 전공 선택 및 변경 규정 개정
- 전공 학점 및 이수 규정 개정
- 전공 개편에 전공별 수여학위 명칭 제정

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소속변경	제7장 <u>전공 선택 및 변경</u>
<p>제31조 (소속변경)</p> <p>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일부 학과의 경우 소속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1.></p> <p>② 소속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③ 미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변경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4.></p> <p><신설></p> <p><신설></p>	<p>제31조(<u>전공 선택 및 변경</u>)</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u>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말에 제1전공과 제2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며, 제1전공을 학생 소속으로 배정한다.</u></p> <p>⑤ <u>전공 및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게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일부 전공 및 학과의 경우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서명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⑥ 전공 및 소속변경은 매 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한다.</p>
<p>제36조 (복수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개정 2020.4.6.></p> <p>① 학생은 소속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을 이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4.6.></p> <p>1.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다른 학과(전공)가 개설한 전공 교과목의 36학점 이상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수여</p> <p>2. 다중전공: 다른 학과(전공)가 개설한 전공 교과목의 36학점 이상 이수</p> <p>3. 부전공: 다른 학과(전공)가 개설한 전공 교과목의 21학점 이상 이수</p> <p>4.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개설한 융복합과정 이수</p> <p>② 융합전공은 복수·다중·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전공이 요구하는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6.></p> <p>③ 복수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6.></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6조 (전공학점 및 이수)</p> <p>① <삭제></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4. <삭제></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제1전공 36학점 이상, 제2전공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p> <p>⑤ 제1전공은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p> <p>⑥ 제2전공은 간호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p>

서명

현 행	개 정 (안)
-----	---------

<신설>

⑦ 제1전공, 제2전공, 부전공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칙 (2023.2.1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 제36조의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하며,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
학 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3] 수여학위
<개정 2016.5.1., 2016.9.1., 2017.4.1., 2018.4.1.,
2018.12.4., 2021.8.12.>

학 과	수여학위	비고
간호학과	간호학사	
보건복지정보학과	보건복지정보학사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복지행정학사	
보건의료산업학과	보건의료산업학사	
AI보건의료학부	AI보건의료학사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바이오공학과	이학사	
약학과	약학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스포츠의학과	이학사	
융합경영학과	경영학사	
데이터경영학과	경영학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언론홍보학사	
미술치료학과	문학사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별표3] 수여학위
<개정 2016.5.1., 2016.9.1., 2017.4.1., 2018.4.1.,
2018.12.4., 2021.8.12., 2023.2.15.>

학과 및 전공	수여학위	비고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세포·유전자재생의학 전공	이학사	
시스템생명과학 전공	이학사	
바이오식의약학 전공	이학사	
디지털보건의료 전공	보건학사	
스포츠의학 전공	이학사	
경영학 전공	경영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커뮤니케이션학사	
심리학 전공	문학사	
AI의료데이터학 전공	이학사	

서
명

2. 제 대학원 학칙

가. 개정 이유

- 중도 포기자 학업 기회 부여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반영
- 학위논문 제출시험 응시 자격 강화

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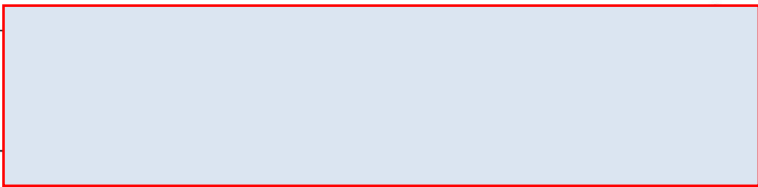
- 재입학 유예 연한 삭제
- 교원 자녀의 해당 교원 과목 수강 제한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점 취득 개정

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재입학) ① <생략>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수료 후 5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7.1.> ③ <생략> ④ <생략>	제9조 (재입학) ① <생략> ②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수료 후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22조의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학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상 불가피하게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은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제41조 (응시자격) 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1학기 이상 마치고 다음의	제8장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제41조 (응시자격) 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현 행			개 정 (안)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9.1., 2015.8.1., 2016.9.1., 2017.8.1., 2017.10.1., 2018.7.1., 2020.3.1.>			자로 한다.		
과정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과정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2학점	9학점	석사학위과정	18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u>부 칙 (2023.2.15. 공포)</u> <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u> <u>시행한다. 단, 제41조에 의한 내용은</u> <u>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u>		

서
명



안건 제5호 부속병원 대손상각 및 자산 매각·폐기

1. 대손상각

(단위:천원)

구분	건수	금액	사유	비고
입원	48	2,849	연락두절, 사망, 시효경과 등으로 채권 회수불가	2019년 발생
외래	674	14,286		
건진	1	55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가	
계	723	17,190		

2. 자산 매각 : 임시 매입 렌트차량 매각(추인)

- 매각 이유 : 기존 렌트차량의 렌트기간(2018.10.24.~2022.10.22. 4년) 종료 후 신규 렌트차량 출고시까지 상당 기간 대기(부품조달 등 문제)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임시 매수했던 차량임 → 부품조달로 신규 렌트차량 출고(22.12.27. 신규 렌트 계약)

- 처분 대상

(단위:천원)

차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매각일자	장부가격 및 처분금액				
				취득가	상각누계액	잔존가	처분금액	처분이익
제네시스 EQ 900	2107호	22.10.17.	22.12.27.	22,726	1,136	21,590	23,818	2,228

3. 불용자산 폐기

(단위:천원)

구분	품명	수량	자산가격			폐기사유
			취득가	상각누계액	잔존가	
의료장비	Digital Mammography Sys 외	31	912,856	909,170	3,686	노후로 수리 불가
공기구비품	환자용침대 외	173	111,818	111,331	487	
계		204	1,024,674	1,020,501	4,173	

서명